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6-84

제출년월일 : 2026. 8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현행 조례에 명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존속기한(안 제3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6. 7. 16. ~ 2026. 8. 5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제3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3조(존속기한) ----------2031년 12월 31일----------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이성애
연 락 처	02-3153-8515